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. 5. 26 선고 2021가단44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5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13,388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. 7. 28. 접수 제327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이영남

별지